

4 학생자치

문과대 비대위, 철학과 학생회 보궐선거 중단해 논란

하시언 기자 hse0622@khu.ac.kr

【서울】지난 24일 문과대학(문과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징계위원회가 철학과 학생회 보궐선거를 중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43대 철학과 학생회 보궐선거는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24일 투표를 하루 앞두고 문과대 징계위원회 측은 철학과 학생회에 선거 중단을 공고했다. 이는 철학과 학생회의 정기총회 불참사유서를 철학과운영위원회(철운위)에서 심사받지 않은 점, 선거관리위원장(선관위)을 호선 하지 않은 점, 선거인명부 작성 이 늦어진 점, 후보 자격심사 및 명단 공고가 세칙에 명시돼 있는 기간에 부합하지 않은 점, 세칙의 정본을 철운위에게 인준받지 않은 점에 근거한 것이다.

이에 일부 철학과 재학생은 문과대 비대위가 각 학과 학생회 내의 회칙 및 세칙 위반에 대한 징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문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 내 징계위원회의 부당한 선거 개입을 규탄한다’는 대자보가 노천극장 게시판에 붙었다.

대자보를 작성한 김성윤(철학 2019) 씨는 ▲징계위원회 소집 근거 미비 ▲징계위원회 소집과 징계 과정의 공고 의무 방기 ▲징계위원회 내의 문과대 학생회칙 위반 ▲징계위원회 목적의 불투명성 ▲징계위원회의 학과 학생회 자치권 침해 ▲선거중단 명령의 ‘징계위원회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칙’ 위반 문제를 주장했다.

징계위원회 운영세칙 제60조 1항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원은 문과



지난 24일 문과대 비대위 내 징계위가 제43대 철학과 학생회 보궐선거를 중단했다. (사진=대학주보DB)

대학 내 공동체의 가치를 위반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징계 여부와 정도를 심의하기 위해 구성되는 비상설특별기구다. 하지만 김 씨는 “학과 내

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배 사건에 대해 문과대 비대위가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며 “문과대 비대위가 각 학과 학생회의 자치 활동을 감시·감독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해

석되며 독립성과 자주성을 무시하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문과대 비대위는 “지난 19일 문과대 비대위에 징계요청서가 접수됐고 학생회칙 제62조에 근거해 징계위원회가 소집됐다”며 “이에 따라 ‘징계위원회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칙’이 마련됐고 선거 중단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징계요청서가 철학과 내부가 아닌 문과대 징계위원회에 접수됐기 때문에 문과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문과대 학생 대표자 회의 구성원 중 1인 이상이 필수적으로 참여하는데 징계요청서의 내용을 모른 채로 징계위원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가해자’라고 지목한 사실 또한 없다”고 말했다.

원클릭 출석인정 10개로 확대 시행

황인찬 기자 philip0503@khu.ac.kr

전자출결시스템 공결 및 출석인정 신청 사유가 기존 1개(생리공결)에서 10개로 확대됐다.

제도 확대는 국제캠퍼스(국제캠) 총학생회(총학)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원클릭 출석인정시스템 확대’ 도입을 학교 측에 제안하며 추진됐다.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

6조는 생리공결, 병역판정 혹은 예비군, 현장실습(교직) 및 학습 당사 등 11개 사유에 증빙서류 교감사 승인 시 출석으로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출결시스템으로는 기존 생리공결만 신청이 가능했다. 다른 사유는 서면으로 교수에게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국제캠 총학 박병준(국제학 2017)

집행위원장은 “출석 인정 시스템이 규정에 맞춰져 있다는 점을 눈여겨 봤다”며 “기존 서면 방식 대신 인포21에서 생리공결과 같은 방식으로 출석인정 신청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공약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다만 제6조 7항 속 조기 취업에 따른 출석인정 사유는 포함되지 않았다. 학사지원팀 윤영아 팀장은 “조기취업 관련 출석인정은 조기 취업으로 볼 수 있는 학생인지 여러 검토를 거쳐야 한다”며 “기존과 동일하게 증빙서류를 단과대 행정실에 서면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 대학도 교원과 학생의 편의를 위해 출석인정 과정을 전산화하는 경우가 존재했다. 서울대, 부산대, 인하대 등이 출석인정 허용 사유에만 온라인 신청 승인 시 출석 인정했다. 해당 제도를 시행 중인 우리 학교와 타 대학 모두 증빙서류 제출 과정을 간소화했을 뿐 최종 승인은 교수 재량인 점은 동일했다.

기대효과로 박 집행위원장은 “대면으로 공결 출석을 인정받는 과정에서 많은 학생이 교수의 불필요한 지적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며 “심지어 ‘혼날까 봐 무서워서’, ‘어차피 출석 인정이 안 될 것 같아서’ 등의 이유로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

음에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원클릭 출석인정 사유 확대로 학생이 정당한 학습권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즉각적인 인식변화는 어려워도 시스템 마련으로 더 이상 정당한 사유의 출석인정을 거부하긴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학생은 인포 21 출석인정신청란에서 신청 사안에 교수 승인을 받은 경우,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전자 출석인정 사유 확대와 함께 출석인정 신청 과목을 추가하거나 취소하기 위해 일괄 취소 후 재신청을 해야 했던 기존과 달리 개별 취소 기능도 추가됐다.



2024학년도 1학기 마이크로디그리(Micro Degree) 신청 안내

2024학년도 1학기 마이크로디그리(Micro Degree)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마이크로디그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신기술로 주목받는 분야에 대한 재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마이크로디그리란?

사회 및 관련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특정한 역량, 직무, 자격 등을 위한 최소 단위의 특화된 교육과정으로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급속한 사회적 변화 및 기술혁신 등 시대적 요구에 맞는 교육환경의 필요성과
- 사회적 수요에 적합한 기술 및 실무 능력 함양에 따른 융합교육 확대에 의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마이크로디그리 안내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puTKltIB2mw>

1. 마이크로디그리 신청 및 포기 기간: 2024.04.15(월) ~ 04.19(금)

2. 신청자격

가. 2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편입생 1학기 이상)

나. 수업연한초과자 신청 불가

다. 학부(과) 단독으로 개설한 마이크로디그리는 해당 소속 학생(다전공 포함) 신청 불가

※ 타전공 학생이 다전공 또는 부전공 이수 전 전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3. 마이크로디그리 신청 및 이수 방법

가. 신청 및 포기 방법

1) 인포21 → 학적 → 전공 → 마이크로디그리 클릭

- 2) 마이크로디그리명 및 교과목 정보 확인 후 ‘신청’ 클릭(자동 승인)
3) 신청 내역 확인
※ 기 신청한 마이크로디그리 포기를 희망하는 경우 본인이 신청한 마이크로디그리 ‘포기 신청’ 클릭(자동 승인)
나. 이수 방법
1) 학생별 최대 3개의 마이크로디그리 이수가 가능하며, 졸업 시 최종 이수된 마이크로디그리 확정
※ 마이크로디그리 중도 포기 및 타 학사제도와 연계성을 위해 졸업(사정) 시 최종 이수 여부를 확정함
2) 마이크로디그리에 포함된 교과목을 마이크로디그리 신청 전 기 이수한 경우에도 인정되며, 전공 또는 교양학점과 중복 인정됨
3) 학수번호가 동일한 교과목이 다수의 마이크로디그리에 편성될 경우 중복으로 인정 불가
4) 이수 확정된 마이크로디그리는 수료증으로 발급되며, 성적증명서에 마이크로디그리 이수 내역 기재

4. 마이크로디그리 현황[자기주도적 학사제도 홈페이지 <https://sdl.khu.ac.kr> 참조]

구분	마이크로디그리명	비고
공통	후마니타스 AI/SW 마이크로디그리 포함 총 3개	학생 소속 캠퍼스 마이크로디그리 신청 가능
서울C	인문예술 마이크로디그리 포함 총 30개	-
국제C	인공지능 이론 마이크로디그리 포함 총 32개	실감미디어 마이크로디그리는 사업단에서 별도 운영

5. 기타사항

가. 마이크로디그리는 9~12학점 이내로 교육과정을 편성하며, 주관대학(학부(과))에서 운영함

나. 마이크로디그리 미이수자 중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는 마이크로디그리 이수를 위해 졸업유예를 할 수 없음